

의안번호	2203298
의 퇴 인	안상훈 의원
회 답 일	2024. 10. 22.
추 계 번호	24C3255

경제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86억 8,400만원(연평균 37억 3,7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(안 제7조)	70	-	-	-	-	70	14
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(안 제8조)	-	300	-	-	300	600	120
진단검사비 지원(안 제9조)	4,235	3,900	3,560	3,278	3,041	18,014	3,603
추가재정소요	4,305	4,200	3,560	3,278	3,341	18,684	3,737

주: 합계는 단수 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	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8조(실태조사)	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9조(조기진단 및 개입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,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, 진단검사 실시, 조기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10조(양육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보,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음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5	안 제11조(교육 지원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인 아동·청소년의 나이, 수학능력(修學能力),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계선지능학생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계선지능학생을 대상으로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12조(자립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인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위하여 자산 형성 및 관리, 자립에 필요한 경제·법률·문화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	의무규정
7	안 제13조(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지원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 자리 창출,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	의무규정
8	안 제14조(평생교육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게 「교육기본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설치,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	의무규정
9	안 제15조(의료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일상생활 훈련, 심리상담 등 의료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10	안 제16조(협력체계 구축 및 사례관리)	(제1항) 경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·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음 (제2항) 제1항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, 의료기관, 평생교육기관,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	재량규정
11	안 제17조(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)	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공공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음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7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	○	○ 교육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2	안 제8조(실태조사)	○	○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3	안 제13조(조기진단 및 개입)	○	○ 대구·인천·전북교육청의 진단검사비 지원 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4	안 제10조(양육 지원)	×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5	안 제11조(교육 지원)	×	
6	안 제12조(자립 지원)	×	
7	안 제13조(고용촉진 및 직업 훈련 지원)	×	
8	안 제14조(평생교육 지원)	×	
9	안 제15조(의료지원)	×	
10	안 제16조(협력체계 구축 및 사례관리)	×	
12	안 제17조(정보시스템 구축· 운영)	×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10조~제17조 등에 관하여는 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워 추계대상에서 제외
-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양육, 교육, 자립, 고용촉진과 직업훈련, 평생교육, 의료 등을 지원하고,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거나,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- 참고로, 현재 보건복지부는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아동복지 시설 내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(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8억 3,800만원, 국고보조율 서울 50%, 그 외 70%)

- 이 외의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-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기본계획 수립(안 제7조)

-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것은 기존의 기본경비 내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
- 교육부의 특수교육종합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
 - 교육부는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라 5년 주기로 ‘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’을 수립하고 있음
 - 제6차 계획(2023~2027) 수립을 위하여 2021년 「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기초 연구」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수행함(연구용역비로 약 7천만원 소요)
 - 본 추계서는 교육부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7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
- 추계결과, 보건복지부장관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첫 해인 2026에만 7천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

[표 2]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(안 제7조)	70	-	-	-	-	70	1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실태조사 실시(안 제8조)

-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주기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2024년 현재 보건복지부는 「경계선 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」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므로, 동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 - 「경계선 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」 연구용역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 실시 중에 있고, 소요 예산은 3억원
 - 2024년에 제정안이 명시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3년 후인 2027년부터 3년 주기로 해당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되, 추계 기간 연구용역 단가(3억원)는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주기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6억원(연평균 1억 2천만원)으로 추계

[표 3]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(안 제8조)	-	300	-	-	300	600	1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진단검사비 지원(안 제9조)

-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,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, 진단검사 실시, 조기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을 실시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본 추계서는 추계 대상을 진단검사로 한정하여, 대구광역시교육청, 인천광역시교육청,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계선지능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 - 2024년 예산서 기준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은 3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진단검사비를, 인천광역시교육청은 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진단검사비를,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음
 - 본 추계서는 매년 시·도별 6~11세 인구¹⁾의 1%를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에 관한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참고로,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24년 지원인원(각각 300명, 500명)은 각각 지역별 만 6~11세 인구 대비 0.3% 수준이며,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년 지원인원(40명)은 해당 지역 만 6~11세 인구 대비 0.05% 수준
 - 지원 인원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(2023.12. 공표통계)를 활용하여 산출
 - 지원 단가는 1인당 20만원이 추계기간 유지된다고 가정
 - 현재 시행중인 사업은 지원 대상과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에서 제외²⁾

1) 제정안은 진단검사의 대상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으나, 기존 사업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미성년자 인구의 1%를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실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, 6~11세 인구를 활용

2) 본 추계서는 시·도교육청 예산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므로, 대구·인천·전북 외의 지역에서도 진단검

- 추계결과, 경계선지능 진단검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80억 1,400만원(연평균 36억 300만원)으로 추계

[표 4] 경계선지능 진단검사비 지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명,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제정안에 따른 총 재정소요(A)	4,407	4,072	3,732	3,450	3,213	18,874	3,775
대상자 수	22,035	20,360	18,659	17,250	16,067	—	—
지원 단가	0.20	0.20	0.20	0.20	0.20	—	—
기존 사업의 총 재정소요(B)	172	172	172	172	172	860	172
추가재정소요(A - B)	4,235	3,900	3,560	3,278	3,041	18,014	3,60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일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이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사를 실시하고 있을 수 있고, 그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